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4개사 10개 차종 607,502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주),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주), 한국지엠(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607,5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① (현대) 쏘나타 등 2개 차종 312,744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설계오류로 내부 소자가 손상되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0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② (기아) 포르테 등 4개 차종 285,327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설계오류로 내부 소자가 손상되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0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EV9 8,592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주차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0월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③ (지엠아이아퍼시픽, 한국지엠) 에스컬레이드 등 3개 차종 839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제동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0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담당자	사무관	정미정 (044-201-3843) 사무관 송주화 (044-201-3919)

참 고

리콜 대상 자동차

□ 현대자동차(주)

대상 자동차(쏘나타)	결함장치(에어백 제어장치)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쏘나타	에어백 제어장치	'09.03.06. ~ '12.01.06.	270,847
쏘나타 하이브리드	* 에어백 제어장치 설계오류로 내부 소자가 손상되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	'11.02.15. ~ '14.10.31.	41,897
합 계			312,744

□ 기아(주)

대상 자동차(포르테)	결함장치(에어백 제어장치)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포르테	에어백 제어장치	'08.08.14. ~ '13.03.18.	157,292
포르테 하이브리드	* 에어백 제어장치 설계오류로 내부 소자가 손상되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	'09.07.29. ~ '13.02.07.	5,857
K5		'10.05.04. ~ '11.06.20.	98,429
K5 하이브리드		'11.05.03. ~ '13.11.25.	23,749
합 계			285,327

대상 자동차(EV9)	결함장치(전자식 브레이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EV9	전자식 브레이크 *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주차기능 작동 해제 시 자동차가 즉시 정지되지 않는 안전 기준 부적합	'23.05.08. ~ '24.06.17.	8,581 11(미판매)
합 계			8,592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주)

대상 자동차(에스컬레이드)	결함장치(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에스컬레이드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제동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22.11.15. ~ '24.01.12.	639 66(미판매)
합 계			705

□ 한국지엠(주)

대상 자동차(타호)	결함장치(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타호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22.11.16. ~ '22.11.23.	46 4(미판매)
시에라	*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제동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23.01.27. ~ '23.03.24.	84
합 계			134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들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200-6000), 기아(주)(☎ 080-200-2000),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주)(☎ 080-800-1228), 한국지엠(주)(쉐보레(타호) ☎ 080-300-5000 / GMC(시에라)☎ 080-800-33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